의안 번호

1763

울산광역시 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서

1. 검토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 5. 31.(월)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나. 위원회 회부일자 : 2021. 5. 31.(목)다. 위원회 심사일자 : 2021. 6. 15.(화)

2. 제안이유

- 가. 상위법령인 「공직자윤리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공직자윤리위원회 민간위원 증원 및 위원 자격요건 구체화
- 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일본식 표현, 어려운 한자어 등을 쉬운 용어로 정비하고 불명확한 단어 및 문장을 명확하게 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가. 공직자윤리위원회 민간위원 증원(안 제2조) : 3명 $\rightarrow 5$ 명
 -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기존 5명에서 7명으로 증원
- 나. 위원자격요건 구체화 (안 제2조)
 - (현행) 법관 ⇒ (변경) 판사, 검사, 변호사
 - O 공직자윤리위원회 민간위원 자격을 세분화
- 다. 일본식 표현, 어려운 한자어 등을 쉬운 용어로 정비

4. 근거법규 : 「공직자윤리법」제9조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따라 중구 공직자윤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정 내용에 부합되게 운영하여 조례의 적법성을 확보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절차상 하자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근 거 법 규

공직자윤리법

- 제9조(공직자윤리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국회·대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정부·지방자치단체 및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교육청에 각각 공직자 윤리위원회를 둔다.
 - 1. 재산등록사항의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 2. 제8조제12항 후단에 따른 승인
 - 3.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취급의 승인
 - 4.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 ② 각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관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 국회의원, 국회 소속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 에 관한 사항
 - 2.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법관, 법원 소속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 3. 헌법재판소 공직자윤리위원회: 헌법재판소재판관, 헌법재판소 소속 공 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직자윤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 5.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공직자윤리위원회: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소속 4급 이하 공무원,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소속 4급 이하 공무원, 시·군·구의회의원, 시·군·구의 4급 공무원과 그 퇴직자에 관한 사항
 - 6. 시·군·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시·군·구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시·군·구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 7.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4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 8.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공직자 외의 공직자와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 ③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3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9명의 위원은 판사·검사·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시·군·구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의위원은 판사·검사·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 ④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의 자격, 임기, 선임 및 심사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한다.
 - 1.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 국회규칙
 - 2.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대법원규칙
 - 3. 헌법재판소 공직자윤리위원회: 헌법재판소규칙
 -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직자윤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5.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 대통령령
 - 6.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공직자윤리위원회 및 시 ·군·구 공직자윤리위원회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 자치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 ⑤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와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 ⑥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 법과 제4항 각 호에 규정된 규칙, 대통령령 또는 조례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